

의안번호	2212579
의 퇴 인	조인철의원
회 답 일	2025. 11. 6.
추계번호	25D4730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경찰청장이 총포 등의 소지허가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00만원, 2031년 5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2,500만원(연평균 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계	연평균
포상금의 지급 (안 제46조의4 신설)	5	5	5	5	5	25	5

주: 1. 포상금의 지급(안 제46조의4 신설)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하여 추계

2.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로 112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6조의4(포상금의 지급) 신설	경찰청장은 제70조제1항제2호 ¹⁾ ·제70조의2제1항제2호·제3호 ²⁾ ·제71조제3호 ³⁾ 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1) 제7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총포(권총·소총·기관총·포·엽총·공기총만 해당한다)에 관하여 제4조제1항·제3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6조의2 본문,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

2) 제70조의2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총포(권총·소총·기관총·포·엽총·공기총은 제외한다)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·제3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6조의2 본문,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·제2항을 위반한 자

3. 제12조제3항(총포만 해당한다)을 위반한 자

3) 제7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3. 제21조제1항·제3항·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6조의4(포상금의 지급) 신설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로 112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1건당 포상금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 - 경찰청에 따르면, 2025년부터 112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5년 예산 기준 1,750건에 1건당 30만원으로 총 5억 2,500만원 편성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포상금 지급 건수에 1건당 포상금을 곱하여 산출
 - (지급 건수)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6건으로 추정
 - 경찰청에 따르면, 2021~2024년 동안 총포 등의 불법 소지 등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487건
 - 이에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97건의 총포 등의 불법 소지 등을 적발하고 이 중 16%⁴⁾는 신고나 고발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

4) 경찰청은 2025년 112신고 포상금 지급건수를 1,750건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2024년 112신고 후 실제 현장 출동건수인 10,913건의 16%에 해당

- 이와 같은 가정 하에 포상금 지급 건수를 추정하면 매년 16건(=적발건수 97건 ×16%, 소숫점 이하 반올림)

[표 2] 포상금 지급 건수 추정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
총포 등의 불법 소지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수	16	16	16	16	1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○ (1건당 포상금) 추계기간 동안 30만원으로 동일

- 포상금은 정책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므로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경찰청장이 총포 등의 소지허가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00만원, 2031년 5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2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지급 건수(a, 건)	16	16	16	16	16	80
1건당 포상금(b, 만원)	30	30	30	30	30	-
추가재정소요 (=a×b, 백만원)	5	5	5	5	5	2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로 112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